

##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

| 관리번호 | 분야  | 중점 추진과제      | 사업주체   | 신규여부      | 사업시기 | 완료시기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Ⅳ-3  | 도시  |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 | 가평군    | 신규        | 중기   | 임기 내      |
| 추진부서 | 건설도시국   | 도시과          | 도시계획팀장 | 박상민(2350) | 담당자  | 윤성문(2351) |
| 추진현황 | <input type="checkbox"/> 완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행후계속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상추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추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류 <input type="checkbox"/> 폐기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| 공정률  | 100%      |

### □ 추진방향

- 가평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수도권의 과밀인구와는 상반되므로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추진
  - ※ 대안: 수도권의 인구소멸대상 지역인 연천, 강화와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제외 추진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2 ~ 2026
- 사업위치: 가평군 전역
- 사업규모: 관련 규정 (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) 개정
- 소요예산: 비예산
- 사업내용
  -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협력하여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

### □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

| 구분       | 목표              | 추진계획        | 목표이행률 | 공정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| 100   | 100 |
| 2022 하반기 | 수도권 규제 문제점 제기   |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 | 5     | 5   |
| 2023     | 수도권규제 완화 공감대 형성 |             | 25    | 25  |
| 2024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5    | 25  |
| 2025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5    | 45  |
| 2026 상반기 | 수도권규제 개선 절차 진행  |             | 20    |     |

## □ 추진실적

| 구분   | 추진실적   | 비고 |
|------|--|----|
| 2022 | 3분기 ·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자료 전달 (국토부교통부장관 면담)   |    |
|      | 4분기 · 수도권규제 문제점 제출 및 상담 (달리는 국민신문고)<br>· 경기북부 발전 학술포럼 개최 (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와 개선방안)<br>· 연천·강화·가평 국회의원 결의문 채택   |    |
| 2023 | 1분기 ·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(산업단지위 심의시 수도권정비위 심의 면제)<br>·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(국토부교통부장관 면담)  |    |
|      | 2분기 ·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<br>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규모 완화 건의(경기도 제출)  |    |
|      | 3분기 ·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<br>자연보전권역 시·군 단체장 회의 추진 및 제도개선 건의(국토부 제출)   |    |
| 2024 | 2분기 ·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간담회 제도개선 건의사항 제출 (경기도 제출)  |    |
|      | 3분기 ·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권역별 규제개선 추진 관련 실태조사자료 제출 (경기도 제출)   |    |
|      | 4분기 ·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피해 사례 제출 (경기도 제출)   |    |
| 2025 | 1분기 · 「 <b>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, 일부개정 시행 (‘25.1.6.)</b> 」<br>※ 연접적용 제외지역 기존보다 확대 (지구단위계획구역, 기반시설부담구역,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까지 포함) 등<br>· 「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, 일부개정 관련 국토부 설명회 참석 (1차, 2차)<br>· 국토부 정책설명회(자연보전권역 연접지침) 관련 질의서 제출 (경기도 제출)<br>※ 타 법령에 의해 간주되거나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도 연접개발 적용기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|    |
|      | 2분기 · 자연보전권역 시·군 및 관계기관(부서) 3차 간담회 참석<br>※ 건의사항 제출 (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요청)<br>· 국토교통부 정책설명회 및 자연보전권역 시·군 4차 간담회 참석<br>※ 건의사항 제출 (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요청)  |    |
|      | 3분기 ·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합리화 국토부 정책설명회(5차) 및 자연보전권역 시군 간담회(7차) 참석   |    |

## □ 향후계획

-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시·군에 대한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상 수도권 제외 지속적으로 건의

## □ 기대효과

-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으로 주거의 질 향상 및 주택 공급난 해소
- 산업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일괄설치 및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
- 산업단지 내 공장 유도로 개별입지공장 설치 억제